삼정 KPMG

KPMG Tax

Korean Tax Update

August 2019, Issue 62

[조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보기]

1.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지특법 제 46 조)

-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연장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감면율을 현행보다 10%p 추가 확대

(2)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 제 74 조)

- 도정법 개정('18.2.7.)에 따른 재개발사업(舊주택재개발사업+舊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도적 특성이 유사한 바, 그 구분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범위에 舊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

2.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다단계·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 17 조)

- 다양한 조세회피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거래 및 우회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

(2)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 39 조)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 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 년(현행)에서 10 년(개정)으로 연장

3.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지방세법 제 13 조)

-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도시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증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여 중과세됨을 명확화
-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등 설치, 본점 등 대도시 전입 이후 5 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 106 조)

-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3)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지특법 제 178 조)

-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본세에 이자상당액(1 일 0.025%)을 가산하여 추징. 단,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가산

4.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 (지방세기본법 제 50 조)

-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3 개월(현행)에서 90 일(개정)로 변경
  -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90 일)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

(2)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 89 조)

- 납세자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

(3)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 91 조)

- 납세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청구 결정 미통지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4)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 147 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부서(현행)'가 아닌, '지방세심의위원회(개정)'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

(5)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 89 조)

- '20 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현행)'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개정)'로 변경

5. 현행 제도의 보완

(1)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지방세기본법 제 84 조의 3)

-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원칙) 통합조사
  - (예외) 비정기조사 사유, 재조사 사유 발생시 부분조사(특정세목, 특정항목) 가능

(2)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지방세기본법 제 89 조)

-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

* (현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3)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 (지방세법 제 7 조 제 14 항)

- 건축이 수반되는 조경비용 등의 경우 토지가 아닌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토지지목변경 비용(현행)이 아닌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되도록 개선함

(4)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안 제 91 조, 제 103 조의 19 등)

-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한 금액임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

(5)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 명확화 (안 법§103 의 24⑦)

- 수정신고 및 납부뿐 아니라 일괄경정청구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

6. 국세 개정안 반영

(1)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지방세기본법 제 49 조 등)

(2)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지방세기본법 제 57 조)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등
  - * 3 개월 이내: 50% 감면(현행) → 75% 감면(개정)
  - * 3 개월 초과 ~ 6 개월 이내: 50% 감면(유지)
  - * 6 개월 초과 ~ 1 년 이내: 20% 감면(현행) → 30% 감면(개정)
  - * 1 년 초과 ~ 1 년 6 개월 이내: 10% 감면(현행) → 20% 감면(개정)
  - * 1 년 6 개월 초과 ~ 2 년 이내 : 10% 감면(유지)
-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등
  - * 1 개월 이내: 50% 감면(유지)
  - * 1 개월 초과 ~ 3 개월 이내: 20% 감면(현행) → 30% 감면(개정)
  - * 3 개월 초과 ~ 6 개월 이내: 20% 감면(유지)

(3)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배제 규정 보완 (지방세법 제 103 조의 3)

-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지방소득세 2%p 중과 대상에서 배제(1%p 중과 적용)
  - * (지정지역 외) 1%p 중과
  - * (지정지역 내) 2%p 중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 월 9 일부터 입법예고함.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 퍼센트(중견기업은 7 퍼센트, 중소기업은 10 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국세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보기]

국세청은 7 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안내문에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연장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전가격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한 상시분석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세원관리 근거를 마련함. "신고내용 확인"의 정의를 정비하고,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신청서를 신설하며,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대상 확대와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 형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보기]

국세청은 12 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5 천만원(현행)에서 7 천만원(개정)으로 상향하여 영세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전문보기]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 개 지방청·125 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 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예정임.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예규·판례]

[판례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 두 65159 판결

- 원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이후, 과세관청이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 및 주식 재평가 등으로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국기법상 무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최초 결정시에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최초 결정 이후 증액경정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재평가에 따른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례 2]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 다 206933 판결

- 국세징수법 제 56 조는 '세무서장은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 1, 2 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 3 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 4 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 5 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 6 호)를 들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 56 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는 바,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판례 3]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 다 272407 판결

-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 96 조 제 2 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84 조 제 3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고려하면,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가평군이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례 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 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2007, 2019. 6. 28.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7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0 조 제 6 항 제 4 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 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2]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부 4106, 2019. 7. 15.

- 조사청은 1 차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매출누락 혐의, 특히 학회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혐의점을 갖고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월별매출 마감자료 등의 문서를 확보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대표이사 및 전무의 계좌까지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1 차 세무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OOO 등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였음에도 조사기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및 임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해 동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국세기본법 시행령」제 63 조의 2 제 3 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4 제 2 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다시 한 번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확대의 이유로 제시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은 재조사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판례 3] 1·2 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 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별도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 광 0886, 2019. 7. 17.

- OOO 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계회사 차입금을 차후 골프장 운영수입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고, 계속되는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한 누적손실로 결손이 심각하여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어 차입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1 차 출자전환에 참여하면서 1 주당 전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하여 채권을 상계한 점, 1 차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변동이 없어 OOO 의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의 한계로 인해 2 차 출자전환 평가기준일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참여한 1·2 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므로 2 차 출자전환 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4]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간편송금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3460, 2019. 7. 22.

-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40 조 제 1 항 다목에서 규정한 내국환업무와 그 기능이 유사하나, 내국환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은행과 고객들을 중개하여 은행이 본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좌송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모바일 앱 이용자의 확충을 위해 주된 사업인 금융상품 홍보용역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7 년 69%, 2018 년 51% 등으로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례 5]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 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 서 2478, 2019. 7. 25.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세가 1 개 사업연도 단위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기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손금 여부가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귀속시기는 2012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6] 쟁점 분할이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부 3308, 2019. 8. 9.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2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은 분할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주체만 바뀐 상태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점, 쟁점 분할 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청산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잔여자산 및 부채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부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 해당함.

[심사 1]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 및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 2018-99 · 436, 2019. 7. 4.

-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 중 제휴사 부담분의 경우, 고객 대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에게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전부 금전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또한 기타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제휴사 간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할인금액만큼 금전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해당 권리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청구인은 그 할인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그 할인금액을 전부 보전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할인금액만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예규 1] 신용카드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2018-법인-3038, 2019. 5. 22.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규 2]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 6. 11.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예규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2019. 6. 25.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 47 조 제 4 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 45

조 제 2 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예규 4]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2019. 7. 16.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법인세법 시행령」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예규 5]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자본거래-3622, 2019. 7. 17.

-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 등의 현물출자로「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 15785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 조의 2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예규 6]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8. 8. 29.

-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법인세법」제 6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법인세법」제 55 조의 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32 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 6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9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